

보도자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▶ 보도일시: 2014.3.12.(수) 석간,
<인터넷 3.12(수) 09:00 이후>
▶ 총 3 쪽

❖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김 왕
사무관 곽 철 흥
☎ 044-202-7687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반도체·화학 산업 등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
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!

-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 공포·시행(3.13일 시행)

- 작년에 OO전자 불산누출('13.1월), OO산업 저장탱크 폭발사고 발생('13.3월) 등 반도체 제조업, 화학 공장 등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
 -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을 전자부품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업까지 확대하였다.
- 특히 이들 사고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함에 따라 원청업체의 안전 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
 -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을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였고, 원청사업주가 하청과 함께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장소도 기존 16개 장소에서 20개 장소로 확대하였다.
-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12일(수) 공포하였다.

1.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

-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기존의 건설업,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등 11개 업종에서 최근 대형 화학사고가 빈발한 전자부품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였다.
 -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는 재해위험이 높은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유해 위험설비를 설치,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하는 제도로써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.
- 금번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유해 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산업에서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2. 원청 사업주가 산재예방조치를 취해야할 작업장소 및 의무 확대

- 원청 사업주가 산재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할 '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'도 기존의 16개 장소에서 화학설비 정비·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 4개소를 추가*하여 원청의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다.
 - * ① 화학설비 정비·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, ②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,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장소, ④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
- '12.1.1부터 '13.9.30까지 원·하청이 함께 작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556건 중 금번에 추가하는 4개 장소를 포함한 20개 장소에서 534건(96%)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
 - 원청 사업주가 법에 따라 이들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 보건관리를 강화할 경우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이를 위반할 경우 원청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- 또한,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을 기존의 건설업, 제조업 등에서 근로자 100인 이상인 대부분의 업종*으로 확대하였다.

* 공공행정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제외

-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-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내도급이 제조 건설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고, 원 하청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사례가 일반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

-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 개정('13.6.12)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

-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하였다.

-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“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, 화학물질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의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근원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확립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등 대형사고 예방의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”고 평가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곽철홍 사무관(☎ 044-202-76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